

길 음 5 재 정 비 촉 진 구 역 재 개 발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건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공 개)

2026. 05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1 주민의견수렴 개요

- 사업시행 시 유발될 수 있는 제반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 환경 및 사회·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및 재산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을 실시함
- 또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2-332호」에 의거하여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거주지역의 통·반장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함

5.1.1 주민 의견수렴

가. 주관행정기관

- 성북구청

나. 의견수렴

- 지역주민, 성북구청, 서울특별시

다. 공람·공고

- 열 램 기 간 : 2024년 8월 22일 ~ 2024년 10월 18일
- 열 램 장 소 : 성북구청(주거정비과), 정릉1동 주민센터, 정릉2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돈암2동 주민센터
 - 인터넷열람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sb.go.kr>),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eims.seoul.go.kr>)
- 공고
 - 공 고 일 자 : 2024년 8월 22일
 - 공고일간지 : 신아일보, 조선일보
 - 인터넷공고 : 성북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라. 주민설명회 개최

- 일자 : 2024년 9월 6일 15:00
- 장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38마길 33(정릉1동 주민센터)
- 참석자

구 분	총 인원	관계기관	사업자	용역사	참석주민
내 용	6명	-	조합장 1명	건축, 정비 : 2명	3명

1) 신문광고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적주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시 절 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운동 1가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공사(주)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36,303.96㎡(특정면적: 26,762.1㎡)
 - 건축면적: 5,036.29㎡
 - 연 면 적: 130,322.29㎡
 - 건물규모: 지상4층~지상10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10월 18일(토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주거정보과, 청운동 주민센터, 청동마을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문정5동 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안도일까지
 - 제출방법: 주민센터 제출(내공람실)에 비치함을 작성하여 공람실로 제출

3. 주민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4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00
 나. 장 소: 청동1동 주민센터(서울시 성북구 청동로308길 33)
 다. 내 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라. 참여대상: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지구 주민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본) 및 공고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buk.go.kr)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문헌관리시스템(www.seoul.go.kr/ve)에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보과(☎02-434-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적주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시 절 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운동 1가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공사(주)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36,303.96㎡(특정면적: 26,762.1㎡)
 - 건축면적: 5,036.29㎡
 - 연 면 적: 130,322.29㎡
 - 건물규모: 지상4층~지상10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10월 18일(토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주거정보과, 청운동 주민센터, 청동마을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문정5동 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안도일까지
 - 제출방법: 주민센터 제출(내공람실)에 비치함을 작성하여 공람실로 제출

3. 주민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4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00
 나. 장 소: 청동1동 주민센터(서울시 성북구 청동로308길 33)
 다. 내 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라. 참여대상: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지구 주민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본) 및 공고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buk.go.kr)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문헌관리시스템(www.seoul.go.kr/ve)에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보과(☎02-434-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아일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적주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시 절 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운동 1가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공사(주)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36,303.96㎡(특정면적: 26,762.1㎡)
 - 건축면적: 5,036.29㎡
 - 연 면 적: 130,322.29㎡
 - 건물규모: 지상4층~지상10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10월 18일(토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주거정보과, 청운동 주민센터, 청동마을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문정5동 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안도일까지
 - 제출방법: 주민센터 제출(내공람실)에 비치함을 작성하여 공람실로 제출

3. 주민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4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00
 나. 장 소: 청동1동 주민센터(서울시 성북구 청동로308길 33)
 다. 내 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라. 참여대상: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지구 주민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본) 및 공고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buk.go.kr)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문헌관리시스템(www.seoul.go.kr/ve)에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보과(☎02-434-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적주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시 절 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운동 1가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공사(주)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36,303.96㎡(특정면적: 26,762.1㎡)
 - 건축면적: 5,036.29㎡
 - 연 면 적: 130,322.29㎡
 - 건물규모: 지상4층~지상10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주민 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10월 18일(토요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주거정보과, 청운동 주민센터, 청동마을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문정5동 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안도일까지
 - 제출방법: 주민센터 제출(내공람실)에 비치함을 작성하여 공람실로 제출

3. 주민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4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00
 나. 장 소: 청동1동 주민센터(서울시 성북구 청동로308길 33)
 다. 내 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라. 참여대상: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지구 주민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본) 및 공고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ebuk.go.kr)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문헌관리시스템(www.seoul.go.kr/ve)에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보과(☎02-434-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2) 인터넷 공고

성북소개

우리구 소개
행사안내
구정소식

새소식
정책소식 살펴보기
유권기관
고시공고
2024년 성북구 이월개 달아심
다
개발영향권
영향권개발제 공시
보도자료
언론보도
홍보자료관

고시공고

제목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제출일지	2024-08-22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319호
담당부서	주거정책과	담당자	김민혁
전화번호	02-2241-2854		
첨부파일	01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문_202408.hwp 02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_202408.pdf 03 [별자 제2호사시] 주민의견 제출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hwp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319호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성북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시스템

평가신청서
평가결과서
심의위원회
소식알림

공고/공람

제목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처: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시행조합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36,333.50㎡(특수면적: 26,782.1㎡) ? 건축면적: 5,109.28㎡ ? 연면적: 130,322.29㎡ ? 건물규모: 지하6층~지상35층(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4년 8월 22일(목) ~ 2024년 10월 18일(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주거정책과), 정릉1동 주민센터, 정릉2동 주민센터, 길음1동 주민센터, 둔암2동 주민센터 다.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공람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시: 2024년 9월 6일(금) 오후 3:00 나. 장소: 정릉1동 주민센터(서울시 성북구 정릉로38마길 33) 다.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라. 참석대상: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거주 주민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및 공고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http://eims.seoul.go.kr)에 게시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주거정책과(☎02-2241-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명	

서울시청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3)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판 게첨



4)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 및 주민설명회 안내문 배포(통반장)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



성 북 구



수신 (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에 따른 협조요청**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319호(2024.08.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에서 시행중인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주민센터

- 공고문 게시판 게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의견제출 서식 비치
-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거주지역의 통·반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통보하여 주민의견 수렴

◎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공고문 게시판 게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의견제출 서식 비치
-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 및 개최 철저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 서식 각 1부(별도송부). 끝.



성 북 구 장 인

수신자 길음제1동장, 둔암제2동장, 정릉제1동장, 정릉제2동장,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무관 강민혁

재개발사업2담당 신희형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08/22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B118 (2024. 8. 22.) 접수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08, 성북구청 / <http://www.sb.go.kr>

전화 02-2241-2854 / 전송 02-2241-6545 / hyeock2992@sb.go.kr / 비공개(5)

5)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6) 주민설명회 현장사진



7) 주민의견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① 사 업 명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② 사 업 장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원		
③ 사 업 자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④ 의 견 제 출 자	성 명		고유번호
	주 소		
⑤ 의 견 내 용	1. 정비구역 제척 불가(정릉제일교회 대지의 수용 요구) ※교회 주소: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78-30/102 2.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으로 구립어린이집과 종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함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평 가 시 초 안 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한함	개최필요여부 : 필요하다. 이유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목적 또한 구립어린이집과 종교활동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0 월 07일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2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가. 서울특별시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분야별 검토의견			
	총괄	• 사업구역 인근 건축물 규모와 개발계획 제시 바람	• 사업구역 인근 건축물의 규모와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음	
		• 102동과 103동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시 바람. 브릿지의 길이, 높이, 너비, 지면으로부터 하단부까지의 높이 등	• 금회 로우브릿지 계획을 삭제하였음	
	기상	• 사업으로 인한 미기상 변화는 미미하나 기후요소로 인한 영향 완화와 기상재난의 영향 저감을 위한 대책 (녹지 계획, 완화시설 설치계획 등) 제시 바람	• 기후요소로 인한 영향 및 기상재난 시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포장 및 다층 식재를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최대한 확보토록 함	【반영】
		• 미기상 변화예측 관련 계절별 분석 필요	• 미기상 계절별 분석을 추가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반영】
		• 71쪽, 74쪽, 93쪽, CFD 모델링 기상 입력자료중 풍향에서, 사업지구 주변 기상관측소 3개 지점중 사업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성북 AWS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북서풍계열에 대한 풍향사례를 추가 모의바람(풍향은 300°, 풍속은 3.0m/s, 나머지 기상요소는 임의 값으로 설정하기를 권장함)	• 북서풍계열 사례와 미기상 계절별 시나리오의 기상상태가 중복되어 제외하고, 미기상 계절별 분석을 추가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반영】
		• 93쪽, 112~113쪽, 127쪽, case3, 4의 경우 case5, 6보다 입력풍속은 약 절반정도로 약한데 비해 분석지점 2번의 풍속 증감량은 case5, 6의 10개 지점 모두의 증감량보다 큰 것으로 예측되었음. 127쪽에 제시된 case3과 case4의 수평바람장을 분석지점 2, 3, 4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바람화살표(wind vector)의 해상도를 높여, 고도 2, 10, 20, 50m에 대해 각각 제시 바람	• Case 3, 4의 바람장 분포도를 사업지구 및 분석지점 중심으로 확대한 수평바람장(고도 2m, 10m, 20m, 50m)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기상	113쪽, 128쪽, 사업시행 후 case6의 4번지점의 지면 부근인 2m 고도에서는 기류 소동이 향상되어 풍속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case5와 case6의 수평바람장(128쪽)을 분석지점 4, 5, 9, 10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가능하다면 바람화살표의 해상도를 높여, 고도 2, 10, 20, 50m에 대해 각각 제시 바람	Case 5, 6의 바람장 분포도를 사업지구 및 분석지점 중심으로 확대한 수평바람장(고도 2m, 10m, 20m, 50m)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129쪽, 보행환경평가 관련 쾌적도, 보행자 높이에서의 온열 환경 변화 등 검토 필요	보행자의 쾌적도 및 온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미기상 모델링 수행 결과를 토대로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체감온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회의자료 18쪽, 기상입력자료에서 계절별 4가지 시나리오를 추가하였는데 이 중 '추가풍향' 시나리오와 유사한 기상상태가 중복되므로 '추가풍향'에 대한 추가모의는 생략 가능함	북서풍계열 사례와 미기상 계절별 시나리오의 기상상태가 중복되어 제외하고, 미기상 계절별 분석을 추가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반영】
	대기질	대기질 현황조사의 측정시간 명확히 제시 바람(일별 총 측정시간, 시간대별 측정 여부 등)	현지조사 시 2024년 5월 8일 ~ 11일 동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3일 연속 일별 1회 측정하였음	【반영】
		대기질은 시간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므로 현황조사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농도의 시계열 결과(시간대별 측정결과)를 제시바람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자동측정망(성북구 측정소 및 정릉로 측정소)의 현지조사와 동일시기의 시계열 변화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대기질 현황조사시 자동측정망 조사는 도로변대기 이외에도 인근 도시대기 측정망 조사결과도 같이 제시 바람 (도로변대기는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대기질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업지구와 가장 인접한 자동측정망(성북구 측정소 및 정릉로 측정소)의 측정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최근 서울시의 대기환경기준 제시 바람 (서울시의 경우 1시간,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 환경기준(제14조관련)」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대기환경기준을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기존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량을 포함하여 발생량 예측 바람	• 기존 건축물의 철거량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량을 추가하여 철거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하였음	【반영】
		• 134~135쪽,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은 시행전 주변에 공동주택 주거 단지가 여러 동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등 사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여건임	• 공사 시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주거시설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 하겠음	【반영】
		• 대기질 조사기간(5월 8일~11일)에는 시기적으로 5월 5~6일에 비가 온 이후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공기가 맑은 여건에서 조사를 함. 조사 기간 중 대기환경기준 이내라는 점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님을 명시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요망	• 대기질 현지조사 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지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대기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141쪽, 철거기간 120일(6개월, 20일/월)과 토공일수 320일(16개월, 20일/월)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작업중단 일수를 고려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과소평가되었음	• 철거 시 및 공사 시,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12,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대기질통계 주의보 경보 발령 내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seoul.go.kr)”를 참고해 작업중단일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을 실시함	【반영】
		• 철거기간 120일 및 토공기간 320일 중 작업중단 일수(주말, 공휴일, 명절, 휴가, 우천, 미세먼지경보 등)를 고려한 실제 철거 및 토공기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2.8)을 토대로 일 토공량 산출 및 실제 공사 투입 장비 대수 반영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확산영향 예측 실시	• 철거 시 및 공사 시,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2023.12,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대기질통계 주의보 경보 발령 내역,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seoul.go.kr)”를 고려하여 작업중단일수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실제 철거 및 토공 기간을 재산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을 실시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149쪽, 공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공사기간이 긴 토공사를 기준으로 예측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철거 및 토공기간을 토대로 철거 시 및 토공 시 구분하여 확산영향 예측 필요	• 철거 및 토공기간을 구분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함	【반영】
		• 161쪽~, 사업지구의 운영시 연료사용량 산출시 사업시행이전과 비교하여 배출량의 증가 및 대기질 영향 예측 바람	• 운영 시 연료사용량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을 실시함	【반영】
		•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영향예측시 타이어 마모로인한 비산먼지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에 포함 바람	• 운영 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을 포함한 유발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실시함	【반영】
		• 180쪽,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질소산화물 발생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공회전과 노후 차량에 대해 판별 기준 설명 필요 · 공회전의 기준이 되는 정차 시간 · 노후 차량의 기준이 되는 연식	• 공회전의 기준이 되는 정차 시간 및 노후 차량의기준이 되는 장비 연식에 대하여 제시함	【반영】
		• 건설장비 운영현황,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저감대책 시행현황 확인을 위한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저감대책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 영향평가와 연계한 활용방안 제시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를 관리하겠음	【반영】
		• 181쪽, 가설방음판넬은 철거시부터 설치하여야 하고, 비산방진망을 상향 검토 바람	• 가설방음판넬 및 비산방진망을 철거 시부터 설치하고 비산방진망을 가설 방음판넬 상단에 1.5m로 상향 계획하였음	【반영】
		• 183~184쪽, 현재계획에는 상시모니터링기기를 2개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터파기 및 토공시에 비산먼지 증가가 예상되므로 송덕 초등학교쪽에 모니터링기기를 추가 설치바람	• 상시 모니터링 기기 설치위치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거나 영향예측 농도가 주변에 비해 높은 지점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 기기 3개소를 설치 할 계획임	【반영】
		• 상시모니터링 측정기기 운영 관련 2개 지점 선정 사유 제시 바람	• 상시모니터링 측정기기 운영 지점 선정 사유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성능인증을 득한 측정기 사용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1등급 제품 사용 바람	• 성능인증을 득한 측정기를 사용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등급 제품을 사용할 계획임	【반영】
		• 측정기기의 주기적 정도관리 및 측정값의 적절성 검토 계획을 제시 바람	• 설치할 상시 모니터링 기기는 성능인증을 득한 기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1등급 제품)를 설치하고, 연 1회 정도검사를 실시하겠음	【반영】
		• 대기오염농도 상시측정장기 설치지점은 본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큰 지점 및 보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 바람	•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거나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대기질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상시 모니터링 기기 설치 위치 선정하였음	【반영】
		• 184쪽, 공사 차량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인접도로 비산먼지 관리 구역을 제시 바람	• 인접도로에서의 살수차량 이동경로, 주변 교육시설 현황 및 보행통로 설치위치를 토공 시 저감시설 총괄도 내 표기하였음	【반영】
		• (그림 5.1.2-28)에 교육시설 등 추가하고, 주거시설들이 인접하므로 사업부지 경계부에 철제형 보행통로 등을 검토 바람	• 저감시설 총괄도 내 교육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지구 경계부에 지붕형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계획하였음	【반영】
		• 185~186쪽, '평상시/계절관리제 기간(12~3월)/비상저감조치 발령시'로 구분해 단계별로 강화된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제시 · (예)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기간에 Euro 6, Tier 4 이상의 건설장비 사용 비율 제시: 계절관리제 기간 50% 이상 --> 비상저감조치 80% 이상 등 · (예) 살수 및 분진흡입차 운영 빈도 상향: 평상시 2회/일 -> 계절관리제 3회/일 -> 비상저감조치 4회/일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반영】
		•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 발령 시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세부 대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사장 야외근무 자제 등 구체적 대책 제시바람	• 공사 시 비산방진망, 세륜·측면살수시설 및 상시 모니터링 기기 등의 설치·운영, 주기적인 살수, 차량운행속도 규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주거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또한 폭염을 포함한 기상재난 발생시 근로자 보호대책 추가 제시 바람	• 폭염을 포함한 기상재난 시 공사장 내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미세먼지 및 오존주의보 이외에도 작업자 안전을 위해 폭염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 제시 바람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 공사장 내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함	【반영】
		186쪽, 친환경 건설장비 관련 가능한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장비(살수차, 분진흡입차 등)를 친환경 장비로 계획 바람	공사 시 살수차 및 분진흡입청소차를 포함한 건설장비는 친환경 건설 장비(Euro 6, Tier 4 이상)를 50% 사용하겠으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간에는 Euro 6 및 Tier 4 이상을 100% 사용하겠음	【반영】
		분진흡입차 관련 최신 연식의 분진흡입차(백필터 장착)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등 관리 바람	최신 연식의 분진흡입청소차(백필터 장착)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을 통해 관리하겠음	【반영】
		189쪽~, 저녹스 보일러는 설치시점에서의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1등급 친환경보일러 설치 바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난방 및 급탕에 저녹스 버너 사용 및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1등급 친환경보일러를 100% 공급 할 계획임	【반영】
		녹지 및 식재계획에 따른 공사시기에 주변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어 비산먼지 발생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 바람	조경공사 시 가림막 헨스 설치, 주기적인 청소 및 살수를 통해 비산 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195쪽, 돌출시설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바라며, 해당 시설로만으로 자연환기가 충분한지 검토 바람	단차를 주어 지하공간 일부를 지상으로 돌출되게 계획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이 가능토록 계획함	【반영】
		197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이용한 인근 도로 비산먼지 관리 이행 내용 · 분진흡입차 필터 교체 내용 · 상시모니터링기기 결과, 환경질측정결과, 인근측정망을 비교하여 추가 점검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살수차 및 분진흡입청소차(필터 교체 포함) 운행 일지, 대기질 현황조사, 상시모니터링 기기 및 인근 대기질 자동측정망 조사결과 비교·분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시하겠음	【반영】
		회의자료 27쪽, A-3지점이 A-1, A-2지점에 비해 PM-10, PM-2.5가 높은 실정을 감안하고, 특히 A-3지점이 송덕초등학교 인근 지점임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감대책을 추가하기 바람	PM-10, PM-2.5가 높게 측정된 A-3지점이 송덕초등학교 인근 지점임을 고려하여 송덕초등학교 인근 상시모니터링 기기 및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로 선정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대기질	• 회의자료 29쪽, 철거시, 토공사시 사업지구 저감대책에 대한 사후평가시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바람	• 철거 및 토공사 시 발생원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현장 내 장비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제시할 계획임	【반영】
		• 회의자료 38쪽, 비산방진망 1.2m 상향한 후 안전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비산방진망을 1.5m로 상향 설치토록 계획 및 검토하였으며, 이는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반영】
	온실가스	• 온실가스 저감계획은 상위계획(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 권고	•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계획 등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내용에 반영을 권고		
		•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명확히 명기 필요	•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명기하였음	【반영】
		•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유형을 서두에 명기 필요	• 사업시행 전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배출현황을 서두에 제시하였음	【반영】
		• 198쪽, 204쪽,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사업시행 예측항목 중 간접 배출량에서 '수도'부분이 제외됨. 포함하여 제시 바람	• 사업시행 전·후 간접배출량 중 '수도'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204쪽~, 304쪽, 326쪽, 본 사업으로 인한 오수발생량(922.296㎥/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필요. 또한, 용수 절감계획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 등도 같이 고려하여 총량 산정에 반영 필요	• 오수발생량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용수 절감 중 절수기기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반영】
		• 204쪽~, 541쪽, 559쪽, 본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필요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54,805톤에 이르며, 순환골재로의 재활용과 함께 상당 규모가 소각, 매립으로 처리될 예정임 · 또한, 운영 시 생활폐기물 등의 폐기물류도 발생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204~205쪽, 건축공사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포함 필요	건축공사 시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은 공사 공법 등에 따라 달라지나,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 크레인 1대씩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음	【반영】
		211쪽, 사업전후 에너지기준만으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만들어 제시 바람 - 사업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사업전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지구 연면적 대비 사업시행 전, 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만들어 제시하였음	【반영】
		〈표 5.1.3-23〉에서 사용된 PV 및 BIPV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제도의 운영으로 위해 개발된 값으로 해당 지역의 일사량, 설치각도, 설치방위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생산량으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ECO2의 에너지자립률 산정 과정에서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활용을 검토 바람	사업지구의 일사량, 설치각도, 설치방위 등을 고려하여 ECO2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를 비교·제시하였음	【반영】
		〈표 5.1.3-26〉에서 모든 항목이 온실가스 증가로 산정됨. 토양 저장, 수목,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저감항목으로 산정되어야 함. 확인 후 수정 바람	토양, 수목 및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항목에 해당하므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 산정 시 저감하여 발생량을 재산정하였음	【반영】
		213쪽, 〈표 5.1.3-29〉에서 사용된 실가동 시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연비가 204쪽의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연료사용량 값과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 요함	〈표 5.1.3-29〉에서 사용된 연료사용량은 토다건설 굴삭기(0.7ton), 덤프트럭(10ton)의 연비실험 수치이며, 204쪽에 제시된 장비투입 연료 사용량은 건설공사표준품셈 굴삭기 0.7ton, 덤프트럭 15.0ton의 연료사용량으로 장비투입 상황에 맞추어 다른 원단위를 인용함	【반영】
		214쪽, 217~218쪽, 태양광 설치계획에서 각 동별 PV와 BIPV 설치 방위를 기입하여 설치용량에 따른 연가 전력생산량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PV 및 BIPV 계획 작성 시 방위를 추가 기입하여 방위에 따른 태양광 발전효율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산정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 214쪽,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함. 일반적인 비교가 아닌 사업부지 특성상 설치조건 및 선택 이유에 대하여 추가 내용 바람	•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선정(설치조건, 가능 및 불가 사유 등) 사유에 대해 비교·제시하였음	【반영】
		• BIPV 입면에 대한 일조시간 검토의 경우 태양고도가 가장 낮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추가 검토 필요	• BIPV 입면에 대한 일조시간 검토 시 동지기준에 대해 추가검토 하였음	【반영】
		• 214쪽~, 태양광 설치가능 옥상 및 벽면적과 계획 설치면적을 동별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기 바람	• 태양광 설치가능 옥상 및 벽면적과 설치면적을 동별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음	【반영】
		• 218쪽, 태양광 음영 영향분석 포인트 지점을 구체화해주시고 각각의 일조시간을 표로 제시 바람	• 태양광 일조분석 시 음영 영향분석 포인트 지점을 추가 표기하고 일조 분석차트를 제시하였음	【반영】
		• 225쪽, 서울시 태양광관련 조례에 따라 신재생 생산량에 대한 유지 관리 계획을 추가 바람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1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계획을 추가 제시 하였음	【반영】
		• 226쪽,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프로그램 입력값 확인을 위한 자료 제시 바람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프로그램 사용 시 형별성능관계내역, 장비일람표, ECO2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263쪽~,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상부 및 주위에는 비상사태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필요	• 전기자동차 주위 비상사태 시 화재진압을 위한 시설(감시설비,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질식포 등)의 설치를 계획하였음	【반영】
		• 전기차 화재예방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를 설정할 것을 검토 요망	• 화재진압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위치를 설정하였음	【반영】
		• 회의자료 55쪽, BIPV 설치가능 면적, 위치에 대하여 명확히 평가하고 자료 제출 바람, Sanalyst 시뮬레이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춘추분 기준 5시간 이상 BIPV 설치가능한 곳을 입면도에 표현할 것	• 태양광 설치가능 옥상면적, 벽면적과 설치면적을 동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춘·추계 기준 5시간 이상 BIPV 설치가능한 곳을 입면도에 표현하였음	【반영】
		• 회의자료 63쪽, 구체적인 수치 제시 및 확인 필요	• 태양광 일조분석 시 음영 영향분석 포인트 지점을 추가 표기하고 일조 분석차트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수질	30년빈도 유출량에서 10년빈도 유출량을 초과하는 유출량이 배제되지 않도록 빗물관리시설(침투, 이용시설) 계획되었는지 여부를 표 5.2.1~87에 명확히 제시 필요. 초과 유출량에 대한 필요대책량은 (공사후 30년빈도-10년빈도 유출량) * 420 (7분 지속시간 초)=79.13으로, 산정된 필요대책량 대비 설치대책량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단, 필요대책량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산정 내역 제시 필요	30년빈도 유출량에서 10년빈도 유출량을 초과하는 유출량이 배제되지 않도록 빗물관리시설을 계획 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초과유출량에 대한 설치대책량은 만족하는 것으로 산정됨	【반영】
		281쪽,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S-1 지점 불소 및 TPH 농도가 기준치에 육박함. 불소 및 TPH에 의한 지하수질오염 여부 확인 필요	S-1 지점 인근으로 지하수질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거 시 지하수질 불소 및 TPH 조사를 계획하였음	【반영】
		296~301쪽, 모델링에 사용된 사업지구 굴착선을 제시바라며, 굴착 라인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 아닌 사업지구경계라인으로 모델링 진행시 재검토 필요	사업지구 굴착라인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굴착 경계선을 제시하였음	【반영】
		313쪽, 침사지 설치외, 강우시 토사유출 저감계획 보완 필요	선포장, 비닐덮개 등 추가 저감대책 수립 및 침사지 사면은 모래주머니 또는 방수천막으로 처리하여 우수흐름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였음	【반영】
		320쪽, 공사완료시, 유출지하수량이 상당함.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양이 최소화 되도록 재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필요	공사완료 시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의 재활용 계획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와 연계하여 유출지하수재활용 모니터링 계획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증빙자료(관리대장)를 제시하겠음	【반영】
		321쪽, 수질오염총량 검토 관련 사업부지 내 우수가 하천 및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권고	사업지구 내 발생 우수는 남측에 위치한 하수관거로 인입·처리 계획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녹지 확보 및 투수포장, 침투집수정, 침투트렌치 등 저영향개발(LID) 시설인 빗물침투시설을 계획하였음	【반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사업시행전·후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등 산정하고 최소화계획 수립(생활계, 토지계 등의 적용 원단위 근거 제시)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을 산정 및 원단위 근거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수질	• 321~322쪽, 지하수위계 자수동여부를 제시하고, 되도록 자동으로 설치 바람	• 지하수위계는 수동 12개소, 자동 3개소, 장기 3개소로 구분하여 계측 계획을 수립함	【반영】
		• 326쪽, 절수기기 사용에 따른 절수량 제시 필요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화 설명자료, 환경부, 2013.08”를 참조하여 절수효과 104.04㎥/일의 용수가 절감될 것으로 산정됨	【반영】
		• 344쪽, 차수판의 제원을 제시 바람	• 사업지구 반경 300m 이내 인근 침수 흔적은 침수심 0.5m 이하로 분포하고 있어, 지하층 연결 출입구에 당초(초안) 2개소의 물막이판을 설치·계획하였으나, 금회 물막이판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8개소(H=0.6m)를 설치·계획함	【반영】
		• 사업구역 서측, 남측 일부 구역 위험지구 해당. 물막이판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구역 서측, 남측 노면수 유입가능지점(지하층 연결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추가 설치 필요		【반영】
		• 물막이판 설치지점과 주변 지반고를 비교하고, 물막이판 유형, 높이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반영】
		• 351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 공사시 침사지 유입·방류구 각각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출지하수량과 재활용량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사기간 중 지하수위 계측 모니터링 주기 1회/일로 조정 필요 · 세륜 슬러지 위탁업체 처리 증빙 추가 필요	• 공사 시 침사지 유입·방류지점 각각 유량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유출량 및 재활용량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겠음 • 공사 시 지하수위 계측 주기는 1일 1회 계측하고 계측결과를 사후 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월 1회 모니터링하겠음 • 세륜·세차시설 세척수 처리 시 위탁업체 처리 증빙자료(사진 및 영수증 등)를 제시하겠음	【반영】
	토지 이용	• 363~364쪽,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내용만을 단순 요약·서술하여 제시 하고 있으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포함해 해당 권역에 대한 내용과 본 사업 간 연계성·부합성·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정리·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도입 및 지형단차를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구축, 대지 순응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토지 이용	366쪽, 369쪽, 어린이가 주이용자임을 고려할 때 구역 외 서측 송덕초등학교와 가까운 기존 공원의 위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역 내 북측으로 변경 배치한 사유 설명 필요	사업지구 내 공원의 위치는 '길음5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시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북측으로 배치를 변경하였음	【반영】
		370쪽, 지역성 및 역사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관련 대상지 일대의 지역성 및 역사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배치계획의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구가 위치한 정릉동 일대의 지역성 및 역사성(주거지역)을 고려하여 건축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밀집된 노후·불량주택과 열악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개선 및 확충하고, '길음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을 추진하여 장기간 정체되었던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하였음	【반영】
		건축물 배치계획에 지역성, 도시형태, 역사성 고려토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 미흡		
		376쪽, 지하 시설물에 대한 채광 및 환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표 세대 내의 환기 체계 및 단지 전반의 바람길 및 통풍축 확보 관련 사항을 도면(개념도)과 함께 제시하기 바람	공동주택은 외기와 면한 2개의 창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실별 인접 벽으로 창을 확보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형성하여 남북측을 관통하는 통경과 동서측을 관통하는 개방공간을 통해 바람길 및 통풍축을 확보하였음	【반영】
		또한, 지하주차장의 환기·채광을 위한 시설(채광·환기창 등)이 계획된 경우 제시하기 바람	지하주차장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위해 단을 조성하여 지하시설물의 남측 벽면을 지상으로 돌출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377~379쪽, 북측에 배치한 사회복지시설, 치안센터, 어린이공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동 시설로 연계한 보행 동선계획 연장 및 시설 추가 여부 검토 제시	사업시행 후 북측의 사회복지시설, 치안센터,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동선계획을 연장하였음	【반영】
		서측 송덕초등학교 및 북측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도로횡단 시 보행안전에 위한 계획 추가 제시	사업시행 후 송덕초등학교 및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에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등 설치를 계획하였음	【반영】
		380쪽, 단지 외부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하여 단지 내 자전거 동선과의 연계성을 제시 바람	단지 외 자전거도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에서 동측으로 약 850m 이격하여 자전거도로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시행 후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동선을 계획하였음	【반영】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이 동일하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지 내 동선의 분리방안(바닥패턴 구분) 혹은 단지 내 운행 금지 방침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단지 내 보행동선은 바닥패턴 등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동선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토지 이용	382~384쪽,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 35.01%로 계획되어 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사업시행 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초안 대비 생태면적률 (35.13%)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연지반녹지 산정 시 지하외벽 두께를 제외하여 산출하였음	【반영】
		자연지반녹지 산정 시 외벽의 두께를 제외하여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		
		옥상녹화 면적에서 관리동선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하고 산정	사업시행 후 관리동선 면적을 제외한 옥상부 녹지면적을 구적하여 생태면적률 산정하였음	【반영】
		387쪽, 국지적 범위에서의 녹지축(징검돌) 연계성을 검토·제시하였으나, 별도로 광역적 범위(반경 5km)에서의 거점녹지 현황 및 연계성을 검토·제시하기 바람	사업지구 반경 5.0km 내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상 사업지구 주변 녹지와 광역녹지축(징검돌) 연계 방안을 검토·제시하였음	【반영】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상의 광역녹지체계와 주변 녹지를 기술하고 본 구역 녹지의 위계상 연계방안 보완 제시		
		388~389쪽, 지하개발 관련 종·횡 단면도 및 층별 시설면적 조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하 각 층별 시설현황(일반·장애인·전기차 충전기 설치 각 주차면 수 및 주민편의시설 위치 등)이 반영된 평면도 및 조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시행 후 지하층은 대부분 주차장(주차대수 1,076대)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내 일반형 주차구역(910대), 장애인 주차구역(36대), 전기차 주차구역(130대) 등을 계획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91대, 급속 39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하층별 및 용도별 상세면적, 주차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 도면을 제시하였음	【반영】
		지하개발면적의 용도별 면적 산정근거 제시 바람		
		회의자료 89쪽, 95쪽,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동선 관련 남-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으나, 동측에 접한 단지에서 송덕초교로의 동선 효율성을 위해 동-서측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거나, 동측 단지에서 현재 보조 진출입 동선으로 이용중인 출입구에서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설계도면 제시 바람	사업지구 동측 경남아너스빌 측으로 연계 보조출입구를 설치하고, 단지 외곽부로 보도를 신설하여 서측 송덕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계획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토양	토양오염도 분석용 토양 시료 채취 위치 선정의 근거 보완 필요(면적 대비 시료 채취 수량(세 지점으로 충분한지) 및 위치 선정, 채취 심도 등에 대한 근거 보강, 필요 시 시추주상도 등 활용, 주유소등 토양오염원/시설 인접 지역 등)	사업지구는 현재 주민이 거주중이며, 사업지구내 지장물(가스관, 우수관, 오수관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 조사지점을 시추조사 인근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토양환경평가 지침들을 참고하여 토양오염 분석용 토양 시료 채취 위치 선정의 근거를 보완하였음	【반영】
		본 보고서에서는 3 지점의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모든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S-1 조사지점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및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으로 기술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에서 기술하였듯이 S-1 지점에서 불소 항목이 우려기준(1지역)의 70%를 초과하였고, TPH 항목의 경우 두 시료에서 우려기준(1지역)의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소 및 유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르면“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이 있는 경우 오염이 있는 지역과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또한 보고서에 기술하였듯이 토양오염 우려 지점을 중심으로 지장물 철거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한 토양오염도 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된 7개소 보다 더 많은 지점의 추가를 권고함	- 토양환경평가지침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 철거 후 사업지구 전반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음 - 심도별(표토, 심토1, 2)에 대해 TPH항목을 포함한 토양오염도 23개 항목 추가 조사 실시 : 11개 지점 - 표토, 심토1, 2층에 대해 우려지역(1지역) 40% 초과 항목(TPH)에 대해 추가 조사 실시 : 3개 지점	【반영】
		이와 더불어 불소, TPH 등 토양정화 사례 등을 사전에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오염토양 정화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된 토양오염 조사계획을 수립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토양	• 393쪽~, S-1의 표토, 심토1,2에서 불소와 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70%를 초과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함	• 전 지점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의 표토층 지점에서 TPH 항목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임에 따라 이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위하여 추가조사를 계획함	【반영】
		• 398쪽, “토양자동측정망” 용어 확인	• “토양자동측정망” 용어를 “토양측정망”으로 수정함	【반영】
		• 399쪽, 이화학 성분 분석 결과 관련 작물 생육 가능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포화침출전기전도도(ECe) 추가 분석 요망	• 식재지 토양 반입 시 “조경설계기준, 2019, 국토교통부”의 토양평가 기준 ‘상급’ 이상의 양질 토양을 반입할 계획이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포화침출전기전도도(ECe)를 포함하여 반입 시, 식재지 조성 후, 총 2회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반영】
		•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함. 지하수의 흐름 방향도 개략적으로 제시 하면 좋을 것임	•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 위치도에 지하수 흐름방향을 포함하였음	【반영】
		• 403쪽, 표토 소요량 산출 바람	• 식재지 반입토량 산정결과 총 10,419.78㎥로 산정됨	【반영】
		• 표토의 이화학적 특징 분석 및 표토 활용가능성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재활용에 적절하지 않음’ 등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제시 요망	• 사업지구 표토의 이화학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경설계기준, 2019,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으로 나타나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음’	【반영】
		• 403~406쪽,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 초과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 상기 규정은 이미 오염이 발견된 부지에서 법적 토양정밀조사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사항임. 토양정밀조사 과정 중 개황조사 수행 후 상세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적용되는 사항임. 상기 규정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일련의 토양정밀조사 계획도 재고 되어야 할 것임	• 전 지점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의 표토층 지점에서 TPH 항목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임에 따라 이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위하여 추가조사를 계획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토양	404쪽~, S-1과 주변에 대한 추가 토양오염 조사를 표토층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으로 기재(404쪽). 불소와 TPH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한 것은 심토1, 심토2에서도 나타났으므로 심토1, 심토2에서도 추가 토양오염조사 실시 요망	전 지점 모든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의 표토층 지점에서 TPH 항목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임에 따라 이에 대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위하여 추가조사를 계획함	【반영】
		활용가능성 평가 결과 표토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반출 대책 제시 필요	식재지 반입토 및 성토용 토양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반입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407쪽, 표토 분석 결과 발 토양 활용 목적으로서 일부 항목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표토가 오염토양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양질토사를 반입하는 것은 과도해 보임	사업지구 표토의 이화학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경설계기준, 2019,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으로 나타나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음	【반영】
		비옥도가 문제가 되므로 적절한 유·무기 비료를 사용하여 비옥도를 조정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비용효율적 방법이라 판단됨	사업지구 표토의 이화학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경설계기준, 2019,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으로 나타나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음	【반영】
		토양 반입 후 식재지 유형별 복수지점으로 선정하고, 측정지점도를 제시 바람	토양 반입 후 식재지(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 각 2개 지점에 대해 이화학적 분석을 계획함	【반영】
		식재지 토양 반입량 산출하여 표기 바람	식재지 반입토량 산정결과 총 10,419.78㎡로 산정됨	【반영】
		409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 식재지 조성 반입토양 : 반입시 1회(반입토양 토양성능평가용), 조성 후 1회(조성 후 토양성능평가용)	토양 반입 후 식재지(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옥상녹화) 각 2개 지점에 대해 반입 시, 식재지 조성 후 총 2회 이화학적 분석을 계획함	【반영】
		회의자료 112쪽, 사후환경영향평가 시 추가 토양오염도 지점 중 어린이공원 예정 지역으로 추가 혹은 이동하여 주기를 바람	어린이공원은 세부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세부 공원계획을 수립 후 추가로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반입토 토양오염조사 계획을 수립토록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지형지질	412쪽, 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인용한 지반조사 결과의 과정 확인을 위한 지반조사보고서(2024.05)제출 필요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인용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지구 및 인접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관 등의 지장물 탐사자료(GPR탐사 등)및 단면별 해석 자료등이 누락됨. 보완 필요하며 결과를 지하 굴착계획 및 흙막이 가시설 설계에 반영 필요함	사업지구 및 인접도로에 관한 GPR 탐사는 공사 전, 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장물 현황 조사결과와 GPR 탐사 결과를 최종 반영한 후 가시설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지장물 조사 및 시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계획 및 안정성 검토 내용을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지역은 표고차 변화가 매우 큰 20m 이상으로 지층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면도 작성이 필수적이며, 지하층 건축물 계획등과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 량 산정등) 수립을 위해 남북 및 동서방향의 지반고가 비슷 한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4공의 시추조사로는 매우 부족함으로 추가 시추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층단면도 작성 등 보완이 필요함	주변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주택 밀집지역인 현장 여건 상 표고차가 큰 남북 지반고에 대한 추가 시추조사는 시설물 철거 후 실시하여 지층단면도 등을 작성·보완하였음	【반영】
		413쪽, 920쪽, 시추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시추주상도(부록) 보완 필요함	모든 지점에 대한 시추주상도를 제시하였음	【반영】
		부록에 제출된 시추주상도는 BH-1, BH-2, BH-3 일부만 제출되어 시추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보완 필요함		
		417쪽, 현장 양수시험은 대수층의 수리상수를 산출하여 지하수 유동 해석 등에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현장시험임. 금번 수행한 양수시험 공 BH-3는 공경이 NX Size로 조성되어 양수시험을 위한 펌핑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대수층 두께 24.3m에 대한 현장 양수시험에 관한 수행과정과 내용 보완이 필요함	금회 양수시험에 관한 수위강하량 및 수위회복량 측정 수행과정 내용을 제시하였음	【반영】
		420쪽, 설계지반정수를 인용한 문헌값의 출처를 명시할 것	설계지반정수 인용한 문헌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설계정수 적용값의 산정과정과 근거를 제시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지형지질	• 풍화암의 점착력 산정결과 현장시험값은 최저 33.3이나, 적용은 안전측으로 32를 적용하였음. 큰 값의 차이가 없으므로 33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풍화암 점착력을 33으로 적용하였으며, 지반강도정수의 단위 통일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지반강도정수 단위가 MPa, kPa 등 혼용되고 있으므로 단위 일치 요망. 다른 단위값도 검토 바람		
		• 420~421쪽, 설계정수 적용값의 산정과정과 근거 보완 필요함		
		• 440~445쪽, 흙막이 구조물 안정성 및 흙막이 공법 선정은 시추조사등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및 선정되어야하나 지층상태를 추정하여 검토한 단면은 보완 필요함	• 추가 시추조사는 시설물 철거 후 실시할 계획임으로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시추조사등 지반조사 결과를 작성·보완하였음	【반영】
		• 시추조사등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C-C'단면, D-D'(좌측)단면, D-D'(우측)단면등 보완 필요함	• 추가 시추조사는 시설물 철거 후 실시할 계획임으로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반영하지 못한 단면을 작성·보완하였음	【반영】
		• 441쪽, 흙막이 공법 선정에 대한 근거 제시	• 흙막이 공법 선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반영】
		• 462쪽, 옹벽설치계획에 자립식 옹벽 H=0.0~6.0m, 보강토 옹벽 H=0.0~6.7m로 계획한 불가피한 사유 제시 · 높이 5m 이상 옹벽의 구체적 위치, 사유 등 기재 필요(심의기준에 “높이 5m 이상의 단일 옹벽 생성 지양”으로 명시)	• 단일 옹벽 높이를 최대 5m 이하로 적용하였으며, 최대 옹벽부가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 안정성 검토 결과 안정한 것으로 검토됨 • 옹벽 설치로 인한 주변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제시하였음	【반영】
		• 옹벽 설치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	• 옹벽 설치로 인한 주변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제시하였음	【반영】
		• 옹벽 설치 계획 세부적으로 제시		
		• 462쪽~, 주변 위험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추가 필요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지형지질	• 주변의 도로 및 보도에 대한 GPR 탐사 결과 및 저감방안 제시	• 사업지구 및 인접도로에 관한 GPR 탐사는 공사 전, 후 실시할 계획이며, 지장물 현황 조사결과와 GPR 탐사 결과를 최종 반영한 후 가시설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GPR탐사 결과 제시(공사 착공 전 1회, 준공 전 1회 실시)토록 하였음	【반영】
		• 465쪽, 계측기 운영시 자동화 계측과 수동계측을 구분하여 보충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건축물 및 도로와 인접한 사업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지하수위계를 금회 자동(3개소) 및 장기(3개소)계측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하였음	【반영】
		• 466~468쪽, 지하6층 지상35층 건축물의 GL.(-)27.71m의 지하굴착 공사시 인접 송덕초교, 경남아너스빌등 대규모단지 및 도로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모니터링 계측기 설치 검토 필요함		
		• 사업지역은 지반고가 20m차가 발생하는 지형조건과 모래섞인 자갈, 실트질 모래등의 투수계수가 큰 토질특성을 감안하여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인접 건축물 및 도로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획된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중 일부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치 검토 필요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지하관정(GW-1)과 인접한 사업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지하수위계를 자동계측 및 장기계측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하였음	【반영】
		• 469쪽~, 주변의 지하수 이용공에 대한 영향 검토		
		•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 확대	• 공사 시 유출지하수의 상등수는 청소용수 및 살수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운영 시 유출지하수의 경우 빗물저류조로 집수 후 청소 및 조경용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하였음	【반영】
		• 유출지하수 발생 및 활용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지하수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하수위 측정 필요	• 지반 공사 이후로 계측기 설치를 유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굴착완료 1년 후까지 지하수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동식물상	• 단지 전체에 대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증진 계획 제시	• 단지 전체에 대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단지 내 다양한 피복유형의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에 대한 식재 계획, 생물 소서식처(비오톱)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475쪽, 대상지의 조사시기가 근접해 있어, 동·식물상의 춘하추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이를 재고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식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추계조사를 2차조사(추계, 2024.10.29.)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4계절 조사가 원칙으로 현재 1회(24.5.29., 6.1 구분)조사로 동식물상조사가 미흡하므로 평가서작성규정에 적합하게 동식물상 추가조사		
		• 사업지구내 생태서식기반인 숲숲어린이공원을 존치하여 보전하는 방안과 연계검토	• 사업지구 내 공원의 위치는 '길음5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시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수립 시 도로계획수립 및 공동이용 시설, 아파트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북측으로 배치하였음	【반영】
		• 518~519쪽, 북쪽 공원지역과 사업지구내 자연기반녹지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식물상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 사업지구 북쪽의 공원지역과 사업지구 내 자연지반녹지 간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녹지 내 식재수종을 어린이공원 내 녹지 및 식재수종과 유사한 녹지 및 식재로 계획하였음	【반영】
		• 503쪽, 훼손수목 370주 중 8주만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가급적 기존 수목 10% 이상 이식 또는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방안 또한 수립·제시하기 바람	• 훼손수목 370주에 대해 추가 이식계획(당초 37주, 금회 14주 추가로 총 51주)을 수립하고 가이식장 조성 등 이식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 503~516쪽, 조경수목의 이식 등 재검토 필요		
		• 현지조사에서 교목은 은행나무 등 37종 370주 중 8주 이식선정, 그외는 전량 훼손될 것으로 예상됨. 장기식재된 조경수목을 재평가(수형, 수세, 병충해, 굴취 등)로 20% 이상 이식여부 결정 등 잔존 방안을 강구		
		• 521쪽, 기존 수목은 8주를 이식할 계획이나 가급적 이식수목을 추가하고 이식수목 관리계획 구체화 바람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동·식물상	• 525쪽, 옥상녹화 시 주변 환경조건(광, 온도, 수분, 바람)을 고려해 환경적응성이 높은 지피초화류의 식재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식재계획시 교관목 및 환경적응성이 높은 지피초화류 식재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식재를 계획하였음	【반영】
		• 525~528쪽, 옥상녹화 714㎡ 내역은 지피류와 세덤류로 단순해서 식재계획에 충실하도록 교관목 식재 적극 반영		
		• 528쪽, 태양광하부 등 가급적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하고 교목과 관목 식재 방안 검토		
		• 529쪽, 소형조류 등이 이입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역내 184㎡ 육생 비오톱을 대지면적의 2%수준인 약 500㎡ 확보	• 육생비오톱의 완성도 확보(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제고 등)를 위하여 면적을 확대(506.35㎡)하였으며, 생태목표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을 포함한 조류와 육상곤충류로 선정하고 소형동물의 유입을 위해 입체적인 식재계획 및 은신처 및 서식처를 추가 설치하였음	【반영】
		• 생태목표종을 박새 단일종보다는 박새+곤충류를 선정하여 육생비오톱을 완성도 확보(문헌종 또는 서울시보호종 고려)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및 보관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석면 모니터링 위치처럼 제시 바람	•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장소(안)을 도면으로 제시하였음	【반영】
		• 555쪽, (그림 5.5.1-11) 석면조사 및 모니터링 지점도에서 내부 2개소, 경계지역 4개소를 설정하였음. 교육시설 민감시설 중심 보완 필요 · 사업지구내 남동측 경계부(21쪽 참조) 외부에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밀집 · 사업지구 서측부분에 송덕초등학교 및 단독주거 밀집지역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보강 필요 • 석면제거시 모니터링 계획 지점을 바람방향, 존치시설(학교 등) 위주로 추가설정하여 도면에 표시바람	• 사업지구 주변 교육시설, 주거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석면 조사 모니터링 지점을 8개 지점 선정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558쪽, 본 사업이 정비사업인지 건축물 사업인지 명확하게 구분 필요. 사업개요(19쪽)에는 10만㎡ 이상의 건축물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건축물 사업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신축건축물의 총면적 * 표준품셈 배출 원단위) / 2.3 * 0.89 * 20% - 건축물 사업으로 적용시 기준 값은 건축 총면적 130,322.29㎡에 대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본 사업은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사업으로,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자재 사용량 산출지침, 2022.06.25.,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생활환경과」에 제시된 건축물사업의 산출식에 의하여 재산정·제시하였음	【반영】
		- 본 사업이 정비사업인 경우 배출량의 50%를 재활용 비율로 산정하여야 함 (산출된 건설폐기물 배출총량 / 2.3) * 0.89 * 50% 〈표5.5.1-30〉에서는 배출량을 45,515.14톤으로 기준 적용을 하였음. 이런 경우는 정비사업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4년도 현재 재활용 건축자재 적용 비율은 50%를 적용하여야 함 〈표5.5.1-31〉에서 재활용 자재 사용비율을 20%로 하였는데, 이는 건축물 사업 기준이며, 정비사업은 배출량의 50%를 적용하여야 함		
		“바)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계획”에서 산출시 배출량을 폐콘크리트로만 적용하였는데 다른 폐기물을 포함한 총량으로 적용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건축물사업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자재 사용량은 「서울시 건설 폐기물 재활용자재 사용량 산출지침, 2022.06.25, 서울특별시 기후 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서 사용되는 자재 중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제품, 입상용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사용량(중량비)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폐콘크리트(굵은골재)에 대한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량을 산정 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기존 수목을 다량 훼손해야 하는지 대한 근거 명확히 제시 바람. 되도록 나무 기증, 이식, 존치 등을 통해 훼손되는 수목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추가 필요 558쪽, 임목폐기물 발생량이 과다하므로 존치를 통해 훼손수목 수를 최소화하고, 훼손보다 이식, 기증 등 대책 강구하여 제시 바람	훼손되는 수목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 이식수목을 선정·제시 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 559쪽, 분류식 관거 신규 설치 후, 정화조 상등수는 공공하수관거에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임. 향후 정화조 폐쇄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1년 준공 시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화조 설치 후 연계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영 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로 유입·처리한 후 상등수는 공공하수관거에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정화조 폐쇄에 대한 세부계획 발표 시 그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운영 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임. 바이오가스법 시행 및 준공시점의 서울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 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적절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 회의자료 155쪽, 폐석면 발생 시 대처방안(절차)에 대해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비산석면관리 등)	• 폐석면 처리대책 및 작업 중, 작업 후 석면 비산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였음	【반영】
	소음 진동	• 사업지구 주변 모든 정온시설(길음뉴타운 경남아너스빌, 길음뉴타운 데시앙, 송덕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음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모든 정온시설(길음뉴타운 경남아너스빌, 길음뉴타운 데시앙, 송덕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음영향을 평가하였음	【반영】
		• 사업지구 인근에 공사 또는 공사예정인 사업장(길음뉴타운 경남아너스빌, 길음뉴타운 데시앙 등 예정지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에 대한 누적영향실시를 위한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에 공사 또는 공사예정인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반영】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모든 정온시설(송덕초등학교 포함)의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로 명시하고, 내부순환로의 도로높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현황소음·진동도를 높이별로 측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와 인접한 모든 정온시설(송덕초등학교 포함)의 사진, 도면, 이격거리 및 좌표로 명시하고, 내부순환로의 도로높이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현황 소음(총별)·진동도를 측정하여 제시함	【반영】
		• 570쪽~,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모든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각 공정별 예측 소음도에 대한 소음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 모든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소음영향을 예측 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소음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소음 진동	• 574쪽, 596쪽, 공사시 및 운영시 시뮬레이션 예측시 적용한 계산 관련 영향인자(반사차수 등) 제시	• 반사차수 등을 포함하여 시뮬레이션 예측 시 적용한 계산 관련 영향인자 제시함	【반영】
		• 575쪽, <표 5.5.2-12> 공사 시 투입장비 관련 건축공사(골조공사) 중에는 건설장비(펌프카 등) 보다는 알폼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 등의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드롭다운 공법, 갭폼 소음방지망 등)이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건축공사 시 알폼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 등에 대하여 드롭다운 공법, 갭폼 소음방지망, 작업자 교육 등 대책방안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 589쪽~, 발파시에는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하여야 함	• 발파 시 진동속도, 진동레벨, 소음을 동시에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발파소음·진동을 측정토록 하겠음	【반영】
		• 발파시에는 사업지구 부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발파진동도를 저감하여야 함	• 발파 시 사업지구 부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0.2kine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시험발파시행, 적정 장약량 설정 등 발파 진동 저감대책 수립함	【반영】
		• 발파전 주변 정온시설에 계측기(게이지 등)를 설치하고, 발파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계획 수립 및 실측하여야 함	• 발파 전 주변 정온시설에 균열측정기, 건물경사계 등 계측기를 설치하고, 발파 시 소음·진동 실측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제시하겠음	【반영】
		• 586쪽, 공사장 소음 예측 시 공정별 공사장비 투입지점을 예측 대상 지점과 최대 영향 지점으로 배치할 필요 있음(저감방안 적용 시에도) · 철거공, 토공, 기초공 시 해당 공사 바운더리 내에서 1지점 이상 예측 대상지점의 최대 영향 지점에 배치 후 예측	• 공정별 투입장비 지점을 예측대상지점과 최대 영향지점으로 배치하여 (C _{sae} 1~4) 예측함 · 공정별 해당 공사 바운더리 내에서 1지점 이상 예측 대상지점의 최대 영향 지점에 배치 후 예측	【반영】
		• 596쪽~, 운영시 내부순환로로부터의 소음을 고려하여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산출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 시 내부순환로로부터의 소음을 고려하여 정온시설에 대한 예측소음도 산출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610쪽~, 공사시 사업지구의 철거공종을 포함한 공사시기(착공 및 준공 시기)를 확인하여 보고서에 명시하고,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 시 사업지구의 철거공종을 포함한 공사시기(착공 및 준공시기)를 확인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공정별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사업지구 부근을 도로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로통행안전 분석 후에 타워크레인 공사반경(예측)에서 도로통행하는 주민,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주변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철제지붕형 도로통행안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함께 도면에 명시하여야 함	사업지구 부근을 도로로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로통행안전을 위하여 예상 타워크레인 공사반경 및 철제지붕형 도로통행안전 구조물과 가설 방음판넬 설치계획, 공사차량 이동경로 등을 제시함	【반영】
		611쪽, 공사장 소음 저감대책 적용 예측 시 가설방음판넬 보통상태 접합 투과손실치 15dB(A) 적용 근거 제시 · SoundPLAN 프로그램 내 방음벽의 경우 500Hz 기준 투과손실치 25dB(A) 이상의 영구방음벽이며 투과손실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 · 따라서 해당 투과손실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회절감쇠치에서 투과손실치를 수계산하여 삽입손실치를 산출 후 다시 저감방안 전 예측치에서 삽입손실치를 제하는 방법분임 · 또한 투과손실치 15dB(A)를 적용할 경우 삽입손실치는 15dB(A)를 초과할 수 없으나 몇몇 공종과 예측 지점의 경우 초과하는 수치를 보임	기존 투과손실치 15dB(A) 적용이 불가능한 SoundPLAN 8.2 버전 에서 투과손실치 15dB(A) 적용이 가능한 SoundPLAN 9.1 버전으로 변경하여 재산정함	【반영】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지면 사이와 판넬사이의 누음이 되는 공간이 없도록 반드시 접합상태를 양호 이상으로 할 것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지면 사이와 판넬사이의 누음이 되는 공간이 없도록 반드시 접합상태를 양호 이상으로 관리토록 하겠음	【반영】
		본 사업부지 인접 지역은 다수의 고층 정온시설이 위치하므로 12~14m 높이의 방음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므로 가설방음 판넬 공사장 내부 벽면을 흡음형으로 할 필요가 있음	사업지구 인접 지역은 다수의 고층 정온시설에 음반사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공사장 내부 벽면을 흡음형으로 계획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의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총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야 함[가설방음판넬설치시 풍하중 등 안전성 및 음영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정온시설의 영향예상지점에 대한 총별 예측소음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며, 가설방음판넬설치 시 풍하중 등 안전성 및 음영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반영】
		•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 예측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총별, 지점별, 공정별 추가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예측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장비 등의 저감대책을 통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 621쪽, 이동식 방음벽의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사장비별 소음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전달경로상 회절이 발생하도록 적정 길이,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 적용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함	• 이동식 방음벽 운영 시 공사장비별 소음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전달 경로상 회절이 발생하도록 적정 길이,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토록 하겠음	【반영】
		• 주변 정온시설의 고층부의 경우 공사장비의 이동에 따라 회절이 발생 하기 어려우므로 적용 가능한 공사장비에 돔형태의 에어방음벽 적용도 고려 바람	• 소음민원 발생 시 현장여건 및 장비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어방음벽, 돔형태 에어방음벽 등 적절한 차음성능을 가진 이동식방음벽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음	【반영】
		• 625쪽, 건축공사 시 적용한 지면 위의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이외에도 신축건축물의 위치, 높이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소음이 발생함	• 건축공사 시 알폼 설치/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 등에 대하여 드롭다운 공법, 갱폼 소음방지망, 작업자 교육 등 대책방안 수립하여 제시함	【반영】
		• 건축공사 시 거푸집(알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공명음 및 공구류 소음 등)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627쪽, 철거공사 시에도 소음모니터링기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소음 상시모니터링기기 설치를 계획함	【반영】
		• 공사시 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판넬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 표시	
		• 공사시 가설방음벽 상부에 소음자동측정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벽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함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1일 기준으로 공사시점부터 공사완료 시 까지의 상시 소음도를 측정 및 기록 유지(data 확보)	
		•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1일 기준으로 공사시점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상시 소음도를 측정 및 기록 유지(data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 628쪽, 인접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발파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발파 계획 사전 공지, 점심시간 및 학교 비운영 시간을 활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 교육및 보육시설에 발파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발파 계획 사전 공지, 점심시간 및 학교 비운영 시간을 활용토록 하겠음	【반영】
		• 629쪽, (그림 5.5.2-30) 영구방음벽 설치 구간 관련 101동, 102동 전면예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높이 14m의 영구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설치 가능 공간 및 저층부의 조망/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계획 변경으로 101, 102동의 용도가 주거시설에서 주민공동시설 및 필로티로 변경·계획됨에 따라 101, 102동 전면부에 계획하였던 방음벽을 제외하였음	【반영】
		• 633~636쪽, 환기, 펌프, 송풍기, 덕트, 배관 등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음기, 방진스프링 등 공동주택 내부 설비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을 수립함	【반영】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목표기준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으로 설정하고, 준공전 20%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실측하거나 전수조사하여야 함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목표기준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3등급으로 설정하였으며, 준공 전 유형별 세대수의 5%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조사토록 하겠음	【부분반영】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보완후 실측(전수조사)하여야 함	• 층간소음(바닥충격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만족시까지 보완시공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층상배관공법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저감을 위해 세대 내 나선형 저소음배관 및 이음관을 사용을 계획함	【부분반영】
		•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이 발생하는 경우, 저감계획 및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저주파음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참조)	•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세대 내부에 별도의 실외기실을 배치함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635쪽, 준공 전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으로 변경하는 편이 내용상으로 맞을 것 같음. 모니터링은 계속 확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기존 “바닥충격음 모니터링” 항목을 준공 전 “바닥충격음 사후성능확인”으로 변경함	【반영】
		637쪽,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 바람 - 공사 시 지점별 소음 측정지점을 최저, 최고층 이외에도 예측 시 최대 영향 지점에 대해서도 측정 지점 추가 필요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보완하여 제시함 - 공사 시 지점별 소음 측정지점을 최저, 최고층 이외에 중간층을 추가하여 선정함	【반영】
		회의자료 192쪽, 시공 중 인근 공동주택(데시앙, 아너스빌) 고층부의 소음민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및 소음계측(모니터링) 계획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계획(전체 세대의 10%)은 충분하다고 사료됨(법적기준인 최대 5%에 비해)	- 공사 시 인근 공동주택(데시앙, 아너스빌) 고층부의 소음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인근 공동주택 2개 지점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선정함 - 준공 전 유형별 세대수의 5%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조사토록 하겠음	【반영】
	위락경관	건축물의 전면성과 위압차폐감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행자 시선에서의 사업 대상지의 전면성과 차폐성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건축물의 전면성과 위압차폐감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지구 남측 근린생활시설에서 보행자 시선에서 분석하였으며 저층부 투시성 재료를 적용하였고, 기존보도 및 신설보도에서 건축물을 이격배치하여 보행자 기준 개방감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반영】
		이 지역은 길음뉴타운의 기존 사업들과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화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색채와 스카이라인 이외에는 방안 검토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보완 필요	기존의 길음뉴타운 사업들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길음뉴타운 건축물의 색채 및 스카이라인을 분석하였으며, 지형차 구간을 고려하여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건축배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본 사업은 지형·지질부분의 내용(424쪽)을 고려해 볼 때, 40~65m의 표고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이므로 사면에 대한 내용을 경관적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이 전무함. 보완이 필요	사업지구는 지형의 고저차가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고저차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옹벽부근 벽면녹화 및 투시형 소재를 적용하여 지형 변화 구간에서 발생한 사면위압감의 저감방안을 보완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위락경관	• 51쪽, 640쪽, 643쪽,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가 “국가유산”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보고서상 해당 용어를 모두 수정 바람	•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음	【반영】
		• 641쪽, 주요 가로경관 및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보완 해서 제시 바람	• 사업지구 주변의 주요 가로인 정릉로, 서경로 등에서의 가로경관을 분석하였으며 사업지구 주변의 개발된 건축물을 분석하였음	【반영】
		• 가시권 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도면과 내용 작성하여 제시 바람	• 선정한 모든 조망 지점에 대한 가시범위를 분석하였음	【반영】
		• 644쪽, 남서측 약 0.6km에 위치한 정릉(사적)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 분석 후 건물배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	• 사업지구 주변의 사적인 정릉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업시행 후 정릉의 구릉지와 주변 아파트로 인하여 경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반영】
		• 664~668쪽, 남북측 레벨 EL.41~EL.64, 23m를 극복하기 위해 EL.50, EL.54, EL.60.5, EL.64로 대지 조성된 사업대상지 내 통경 구간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양측에 면하는 각 동별 기반부의 과도한 옹벽을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인 공간 활용 및 디자인 개입을 통하여 주요 개방축 내에서의 이용자가 체감하게 될 협곡과 같은 공간감의 폐쇄성에 대응할 필요 있음	• 통경구간 내 오픈스페이스로 시각적·보행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하였고, 건축물 기반부에 벽면녹화 및 교목·관목 추가식재를 반영하여 인공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하고, 저층부 필로티 구성, 입면분절 및 투시형재질, 석재 등 자연친화적 마감재 적용을 통해 보행자가 사업지구를 경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시·공간적 경험을 느끼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일조장애	•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영향 분석이 분석과정에 포함 필요	•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일영 분석 후 과정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건축계획(높이, 이격거리, 배치 등) 조정 등으로 다수의 대안 검토 및 최적인 선정과정 제시	• 배치조정을 통해 내부 및 외부 일조 환경을 개선하였음	【반영】
		• 사업수행후 추가 발생하는 외부일조 불만족 지점의 일조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 조정필요(46번 건물, 56번 건물 등)	• 건축물 층수 및 배치조정으로 외부 일조 불만족 지점 일부 개선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일조 장해	748~774쪽, 본 사업으로 일조피해를 입는 외부 세대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바람	건축물 배치 이동·조정을 통해 일부 개선하였으며, 그럼에도 일부 일조 피해가 발생 되는 내용은 사전에 입주자에게 공고하고 분양가 차등 적용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반영】
		단지내 일조 불만족 지점의 일조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 조정 필요(104, 105, 106 동의 불만족율이 높음)	건축물 층수 축소와 세대 타입 변경으로 103동 1호 라인 및 104동 일조 환경을 개선하였음	【일부반영】
		778~796쪽,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세대들(103동 1호라인, 105동 1호라인)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라인의 배치 각도 조절, 주변 세대들의 층고, 층수 조정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금회 건축 배치 및 층수 계획 시 북측 주거 세대의 일조 침해 지점을 완화하기위해 105동, 106동의 층수를 축소하였으나, 금회 내부 일조 환경을 개선 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층수의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회의자료 205쪽, 일조만족이 가장 저조한 동(105동)의 일조 수인한도 향상을 위한 재계획이 필요	본안 내부일조 만족률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층수 축소는 사업성 저하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단지 내부의 일조 만족률을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로우 브릿지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지 전체 내부일조의 만족률이 2.25% 상향 됨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친환경건물과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6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13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반영】
		• 검토가 미흡한 항목은 지형·지질 항목으로 이에 대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반영】
		• 평가항목 중 기상, 대기질, 토지이용, 동·식물상, 소음·진동, 위락·경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주변의 현황조사와 환경영향저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반영】
		○ 녹색에너지과 •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은 연중 상시 냉난방이 필요하므로 운영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열에너지시스템 적극 발굴·활용	•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선정(설치조건, 가능 및 불가 사유 등) 사유에 대해 비교·제시하였음	【반영】
		• 지열, 수열, 연료전지 폐열 등 재생열을 효과적으로 조합·활용하는 최적의 열에너지 활용 방안 수립을 권장함	• 본 사업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열 및 수열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며, 사업지구 내 단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 배관설치 시 구배가 발생하여 열효율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열 및 수열 설치를 제외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물재생시설과 • 향후 사업 시행인가 전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첨부하여 협의	• 사업 시행인가 전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협의 후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완료하여 협의하였음	【반영】											
		○ 수변감성도시과 • 사업 시행시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사업시행 시 빗물이용시설(옥상녹화, 빗물저류조), 빗물침투시설(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트렌치) 설치 관련 내용을 수록·제시하였음	【반영】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강우유출모델 수행 등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효과 제시	• “환경영향평가지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 위치 및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설치대책량을 산정한 결과 190.3㎥/hr 로 산정됨	【반영】											
		• 개발구역 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빗물이용시설(옥상녹화 808.49㎡, 빗물저류조 271.0㎡), 빗물침투시설(투수성 포장 9,377.3㎡, 침투집수정 25ea, 침투트렌치 171m)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2133-4372)로 제출	• 빗물관리시설 설계 산정내용 검토 결과, 빗물이용시설(옥상녹화 2.284㎥/hr, 빗물저류조 15.312㎥/hr), 빗물침투시설(투수성 포장 159.413㎥/hr, 침투통 3.575㎥/hr, 침투트렌치 9.747㎥/hr)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변감성도시과와 협의완료하였음	【반영】											
	<table><tr><th>구 분</th><th>공공·교육</th><th>공원·녹지</th><th>교통·기반</th><th>민간(대규모)</th><th>민간(소규모)</th></tr><tr><td>빗물분담량(mm/hr)</td><td>6.0</td><td>7.5</td><td>5.0</td><td>5.5</td><td>3.5</td></tr></table>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mm/hr)	6.0	7.5	5.0	5.5	3.5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빗물분담량(mm/hr)	6.0	7.5	5.0	5.5	3.5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지표면보다 낮게 설치)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면보다 낮게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2133-4372)에 사전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계획하여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음	【반영】
		각 빗물관리시설은 적정 집수면적을 확보하여 빗물이 적절히 유입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빗물이용시설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실제 집수되는 면적을 확보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개발구역내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빗물관리시설과 연계 운영하여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 시 유출 지하수는 살수 및 세륜·세차용수 등으로 재활용, 운영 시 청소 및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집수 후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물관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안전국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며,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를 포함하여 협의(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자문 및 최종 협의까지 운영) ※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인·허가) 및 설치 결과(사용승인)를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함.	본 사업지구는 대지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참고하여 협의완료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빗물이용시설(저류조 271.0㎥ 등)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설치 후 성북구청장에게 신고하겠음	【반영】
		사업 시행 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고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중수도시설 설치 의무 대상사업이 아님	【반영】
		- 다음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의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 등) -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기타(난방유 저장탱크 등)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내부에는 토양오염우려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며, 사업시행 시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성북구청으로 신고 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재활용방안(현장살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을 수립하였음	【반영】												
		유출지하수 유출량별 이용방안(1일 발생량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활용방안</th> </tr> </thead> <tbody> <tr> <td>50톤 이하</td> <td>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td> </tr> <tr> <td>51 ~ 100톤</td> <td>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td> </tr> <tr> <td>101 ~ 150톤</td> <td>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td> </tr> <tr> <td>151 ~ 300톤</td> <td>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td> </tr> <tr> <td>301 ~ 1,000톤</td> <td>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td> </tr> <tr> <td>1,000톤 이상</td> <td>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td> </tr> </tbody> </table>	구분	활용방안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구분	활용방안															
50톤 이하	생활용수(건축물 기타용수), 소규모 조경용수(수변시설)															
51 ~ 100톤	도로수변시설(실개천 등),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분수용수, 거점집수시설, 공사용수 등															
101 ~ 150톤	거점집수시설,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151 ~ 300톤	100평이하 면적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대규모 조경용수(인공하천 등), 공사용수 등															
301 ~ 1,000톤	중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1,000톤 이상	대형 건물 냉난방용수, 하천유지용수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 부서 검토의견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9]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유출지하수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에 신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하수도 배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성북구청으로 유출지하수발생량을 신고토록 하겠음

서울특별시

-

유출지하수 주변 입지별 이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활용 가능한 대형건축물 주변

건물 생활용수, 냉난방용수

산업단지

다용도 급수전 공급

하천 인근 (500m 이내)

하천유지용수 또는 조경용수 활용 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대규모개발지역

공사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주거지역

단지 내 조경용수, 냉난방용수, 민방위급수시설

소방서 인근, 구청 인근

소방용수, 도로청소용수

▶ 매뉴얼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9]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유출지하수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에 신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하수도 배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성북구청으로 유출지하수발생량을 신고토록 하겠음

사업시행 시 「지하수법」제9조의2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0㎥ 이상(건축물 1동의 경우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일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유출지하수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에 신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하수도 배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성북구청으로 유출지하수발생량을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 위와 같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1일 300㎥ 이상(건축물의 경우 30㎥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하층 공사 완료 기준 -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 건축물 :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	【반영】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유출지하수 발생량 신고를 하여야 함		
		해당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 ※ 주요내용 - 지하수위 일·누적 변화량 계측은 1일 1회로 하며, 관리기준은 일 변화량 0.5m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위¹ 이내로 관리 (매뉴얼 p.5~17) ¹ 관리수위는 설계 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량으로 설정 -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 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를 초과 하는 등의 경우 인·허가 기관 또는 발주청에 즉시 보고 (매뉴얼 p.8~9, 14~15)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일·누적 변화량 계측은 1일 1회, 관리기준은 일 변화량 0.5m 이내, 누적 변화량은 관리수위 이내로 관리하고, 지하수위 일 변화량이 0.5m 초과 또는 누적 변화량이 8m 초과 시 성북구청에 즉시 보고 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 ※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양식으로 작성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송부 ▶ 담당 나영탁 주무관(☎ 02-2133-3777, 전자우편 groundwater@seoul.go.kr) ▶ 매뉴얼 및 측정데이터 작성양식은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에서 다운로드 ※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 접속 → 열린마당 → 자료실 → 게시물 번호 5(매뉴얼), 6(작성양식)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성북구청 및 서울시에 제출하겠음	【반영】
	-	공사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전에 지하수 보조측정망으로 활용토록 협의	공사 시 지하수 관측을 위해 착정한 관측공은 보조측정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이전 상태로 지하수를 보존토록 적법하게 원상 복구 및 폐공처리하겠음	【반영】
	-	회의자료 211~212쪽, ‘우수저류조를 유출지하수 저장으로 하겠다’ 함. 우수량 37ton/일, 유출지하수량을 모두 검토한 후 우수저류조 운영계획을 세울 것	유출지하수량을 고려하여 집수용량보다 여유있는 우수저류조(271㎡) 설치를 계획하였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자원순환과 •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14종 우선)	-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8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34호」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분리배출·운반·처리하겠음	【반영】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	【반영】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하여 배출을 최소화할 것이며, 발생한 혼합건축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재활용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반영】
	-	•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반영】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공사 *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골재 등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사업지구 내 도로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골재사용량의 50%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 계획하였음	【반영】
		•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사용량 및 도면 기재)	• 사업지구 내 도로 보조기층에 골재사용량의 50% 이상을 순환골재를 사용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정수형, 02-2133-3730)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서울시(자원순환과)에 제출하겠음	【반영】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자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사업지구 내 별도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겠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종류별 보관 후, 분리·배출토록 하겠음	【반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건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4조의6)		
		특히,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전체 점유자는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함(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할 경우, 서울시(자원순환과)에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최용진, 02-2133-3734)	공사 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및 폐석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였으며, 석면 해체 시 발생하는 폐석면은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담당 김용구, 02-2133-3731)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조경과 • 계획수립 시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교목 370주)에 대해 경관이 우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수목 등은 최대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훼손수목 중 식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조경수목 51주에 대한 이식 계획(단지 내 식재)을 수립하였으며,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대해 기증 및 기부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 시 '나무나눔 사업'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도로 신규 개설 및 선형 변경 시 성북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 필요	• 사업시행 시 도로 신규 개설 및 선형 변경으로 인한 가로수 및 띠 녹지 식재계획이 발생할 경우, 성북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음	【반영】
		•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과 인접한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 운영시 차량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정화수정(서울시 미세먼지 저감권장수종)'을 참고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택지지구 내 개발사업 진행시에는 도심 경관 개선 및 기후 변화대응을 위하여 옥상녹화·벽면녹화·실내녹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식재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 사업시행 후 입체적인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층고밀화된 지반별 (자연·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녹지조성 및 육생비오톱 조성 등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을 계획하였음	
		•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등의 절차 이행 시 조경, 녹지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 자연생태과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연결성 확보 방안 마련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육생비오톱,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식재계획 시 주변녹지와 유사한 수종 및 소형동물의 유입을 위한 식이식물, 다층식재를 반영하였음	【반영】
		• 본 사업 지구 및 주변지역은 시가화된 도심지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라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필요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이동로 단절, 서식·활동공간 부족 등 요인을 조사하고 피해 방지대책 수립 필요	• 사업지구는 기존 노후화된 주거지로 숲숲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녹지 공간이 분포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야생생물의 이동성·번식기 등을 고려한 시간·계절별 공사 계획 및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 조류 등의 식이식물로 활용 가능한 수목, 소형 동물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관목 도입 검토 등으로 생물서식공간 조성방안 마련		
		• 동·식물 피해 예방 및 보호 대책 수립	• 현지조사 시 출현한 박새를 포함하여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포획 및 살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보호 교육 및 보호종 추가 확인시의 보전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현지조사 시 서울시 보호종 박새 1종이 확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지구 내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 발견 시 보전대책 마련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2023 서울시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 2023.12, 서울특별시” 및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24, 환경부”를 참고하여 조류충돌 관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방음벽,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류 충돌 방지 방안 수립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방음벽,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류 충돌 방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수립 필요 ※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 참조		

구분	항목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 부서 검토의견			
	-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간·계절별 공사 계획 수립 필요(번식기 공사 회피, 야간 공사 지양 등)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시간별·계절별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붙임2], [붙임3] 서식으로 작성하여 자연생태과로 보내주시기 바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 담당 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할 계획임	【반영】

나. 구청 실과의견

- 구청 실과의견 없음

다. 공고 공람 주민의견

주민의견	의견 답변	비고
1. 정비구역 제척 불가(정릉제일교회 대지의 수용 요구) ※ 교회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78-30/102 2.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으로 구립어린이집과 종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함	- 본 사업부지는 주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한 사업으로 정릉제일교회 부지의 수용은 불가한 사항임 - 전문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공사 시 소음, 분진의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법적기준 달성 및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